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2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위성락·김한규·김병주

문정복 · 김윤덕 · 정을호

임호선 · 남인순 · 박희승

위성곤 · 신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19대 국회부터 제안된 바 있으나,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5호).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글날: 10월 두 번째 월요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제2조(국경일의 종류)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한글날: 10월 9일</u>	5. <u>한글날: 10월 두 번째 월요</u>		
	일		